

국방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과 대체역 소집면제·소집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도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병역의무자 채용 시 병역증 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9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 병역증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사본을 비치·관리하도록 함.

다. 국외출국자를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6조)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전 출국한 사람을 소집 연기자로 관리하도록 함.

라.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제출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8조 및 제89조)

- 1) 대체역으로서 생계곤란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원서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전·공상 사유로 복무단축 또는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원서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병역처분변경 관련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제96조)

- 1) 대체역으로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2)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병역 정보의 보존 관련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114조의2)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보존하는 병역 정보의 대상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와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소집해제를 추가함.

사. 대체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제117조)

대체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병무청장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복무,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전시근로역”을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면제·소집해제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을 “군복무,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영 연기자”를 각각 “입영등 연기자”로 한다.

제88조의 제목“(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을“(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입을”을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등)”을“(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2항”을 “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2제2항”으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입을”을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원”을 “병역처분변경원”으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소집해제”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원”을 “병역처분 변경원”으로 한다.

제114조의2제1항 중 “보충역”을 “보충역과 대체역의”로, “편입과”를 “편입,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소집해제와”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지방병무청장은”을 “지방병무청장(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8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8호서식 및 별지 제1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9호서식 및 별지 제13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적기록표

(앞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병역판정검사 시																		
									현재																
부모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학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직업(경력)														
세대주	성명	전화번호			관계		자격·면허				방사선 등 촬영				병리검사										
심리검사	종류		적부		적성분류			혈액형																	
신체검사	장소 및 검사구분		연월일	신장	체중	시력		혈압			외과		이비 인후 과	비뇨 기과	피부 과	신경 과	정신 건강 의학 과	치과	신체 등급	수석 전담의 (서명 또 는 인)	병역 처분	병역 판정관 (서명 또 는 인)			
						좌	우	안 과	수축 기	이완기	내과	일반흉 부신경											정형 성형		
검사소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															
비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군복무기록

군번	성명(漢字)			사진 (2.5cm×3cm)	구분	연월일	소속 및 직책	근거	확인 (서명 또는 인)	
	부호	특기명	연월일							근거
군사특기					복무 기록					
진급강등	계급	연월일	인사명령 근거			확인				
군사교육	교육기관명		과정 및 기별	부여 특기		기간				
상벌	구분	사유	연월일	상벌권자	근거					
복무기간 단축	복무기관(업체)명		의무복무기간	단축기간	확인					
입원기록	입원일	퇴원일	상이의 구분	병명 및 발병 원인	병원명					
그 밖의 사항					휴가					
					전역	역종	전역일	「병역법」	인사명령 근거	확인(서명 또는 인)
					귀향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관	처리기간	즉시
신청서 종류 [] 병적증명서([] 한글, [] 영문) [] 병역증 재발급 [] 전역증 재발급([] 일반, [] 군 경력 포함)				
발급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small>* 영문증명서 신청자만 기재</small>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군별	군번	계급	전역(소집해제)일자
용도	[] 공직자 등 신고 [] 입영(소집) 사실 확인 [] 경력 확인 [] 취업 [] 시험 응시 [] 보훈대상자 등록(안장심사용 포함) [] 기타 ()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	[] 군(대체)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 처분사유 또는 질병명 [] 기재 [] 미기재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처분사유 및 질병명·심신장애 내용인 경우 선택		
	[] 군(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① 군 별 [] 기재 [] 미기재 ② 군 번 [] 기재 [] 미기재 ③ 계 급 [] 기재 [] 미기재 ④ 복무분야 [] 기재 [] 미기재 * 해당항목은 전투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양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한 경우에 한함 ⑤ 복무계급 [] 기재 [] 미기재 * 해당항목은 전투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양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한 경우에 한함 ⑥ 병과(특기) [] 기재 [] 미기재 ⑦ 전역구분(사유) [] 기재 [] 미기재 ⑧ 역 종 [] 기재 [] 미기재 * '공직자 등 신고용', '보훈대상자 등록용'은 별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입영(입관, 소집)일자 및 전역(소집해제)일자는 기본항목으로 기재하여 발급		
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	* 상단의 신청 내용 이외에 군경력 등 요구사항 기재		발급매수 [] 매	

위와 같이 병역증서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인 지참물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1. 증명사진(2.5cm×3cm) 1매(일반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군 경력이 포함된 전역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나 전시근로역, 병역이 면제된 사람 또는 대체역 소집면제·소집해제된 사람의 병적증명서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병역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병적증명서

발행번호		유효기간	
용도	[]공직자 등 신고용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군(대체) 복무 여부	[] 복무를 마친 사람 []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병역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병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앞쪽)

Certificate No.		Terms of Validity	
Personal Information	Name	Date of Birth	
Person whether or not served	[] Person served [] Person not served		
Details			

This is certified under Article 8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Military Service Act.

Date of Issue :

Head of ○○ Regional Office of Military Manpower, Republic of Korea
(Head of ○○ Branch Office of Military Manpower, Republic of Korea)

Official
Seal

210mm×297mm [백상지 80g/m²]

Explanation

Categories of Military Service

- Active service: enlisted men entered by conscription or application, officers, warrant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military cadets, appointed to active service under Military Service Act or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 Reserve service: those who have completed active service, and others who are transferred to reserve service under Military Service Act.
- Recruit service: those who are judged capable of being in active service as a result of the draft physical, but not determined as those to be enlisted in active service du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armed forces, and those who are in service or compulsory service as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public health doctors, the doctors in exclusive charge of draft physical, international cooperation doctors, public-service advocates, technical research personnel or skilled industrial personnel, or have completed such service or compulsory service, and those transferred to recruit service under Military Service Act.
-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those who are under obligation to service in the military, but are not in the active, reserve, recruit or Wartime labor service.
- Wartime labor service: those who are judged incapable of being in active or recruit service as a result of the draft physical or the physical examination, but determined capable of military support affairs through a call up for wartime labor, and those transferred to the Wartime labor service under Military Service Act.
- Alternative service : Those who are assigned to the alternative service according to the Act on the Assignment and Performance of the Alternative Service among the obliged who are fulfilling or required to fulfill the military service on behalf of active service, recruit service or reserve service on the grounds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signment to Military Service by Physical grades

- Persons whose physical grades are Grades I through IV, shall be assigned to be enlisted in active service, the recruit or second militia service, taking into consideration his qualifications, such as his academic background, age, etc.
- Persons whose physical grade is Grade V, shall be assigned to the second militia service.
- Persons whose physical grade is Grade VI, shall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 Persons whose physical grades in Grade VII, shall undergo draft physical again.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현황

(3쪽 중 제1쪽)

입영 계획 인원	입영통지 인원							인도 인원						
	계	적령자 /졸업 예정	학적 변동	입영원	재입영 대상	19세 입영 희망	본인 선택	계	적령자 /졸업 예정	학적 변동자	입영원	재입영 대상	19세 입영 희망	본인 선택

입영일 연기														행 방 불 명	입 영 기 피	입영 불능						
계	질 병	군 지원 응시	재 감	유 학	이 민	생계 곤란	자 녀 양육	국 가 고 시	동 시 재 영	대 학 (원) 입 시	기 말 고 사	졸 업 예 정	직 업 훈련 원			기 술 훈 련 원	사 업 기 능 양 원	자 격 시 험 응 시	그 밖 의 사 유	계	통 지 제 외	통 지 취 소

※ 그 밖의 내역:

적성별 입영 현황														
구분	직군	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중장비 운전	수송 장비 정비	차량 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공 통

입영자 연령별 현황												
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입영자 학력별·신체등급별 현황				
구분	계	1급	2급	3급
계				
대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계	생계곤란	부모·배우자·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통지 제외 및 취소현황					
입영불능 사유	통지 제외	통지 취소	입영불능 사유	통지 제외	통지 취소
계			대체역 편입신청		
지원입영			산업기능요원		
사망			군간부후보생		
선원, 국외, 재감 등			이민		
생계곤란 또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유학		
			직군 변경		
전상·공상, 질병, 심신장애, 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			수형		
			그 밖의 사유		

귀가자 현황

○ 질병유형별 · 부대별

질병유형 부대	인도	계	%	결핵	내과	정신건강 의학과	외과	안과	이비인 후과	피부과	비뇨 기과	치과	신체 일반 부위
계													
육군훈련소													
2작전사령부 예하 지역 사단													
306보충대													
102보충대													
해군 · 해병													

○ 질병유형별 · 치유기간별

질병유형 치유기간	계	결핵	내과	정신건강 의학과	외과	안과	이비인 후과	피부과	비뇨 기과	치과	신체 일반 부위
계											
명시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등급별

신체등급	치유기간	계	명시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계					
1급					
2급					
3급					

○ 학력별 · 치유기간별

학력	치유기간	계	명시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계					
대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 귀가자 연령별

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 귀가자 처리현황

계	재입영 통지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변경				처리 중
			소계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현황서(월)

(4쪽 중 제1쪽)

1. 사회복무요원(교육) 소집

가. 총괄																												
시기	구분	계획	통지	%		취소	%		연기	%		행방 불명	%		기피	%		인도	%		귀가 (퇴영)	%		소집 (입영)	%			
금월																												
누계																												

나. 통지내역																	
시기	구분	계	정상 순위	재학생 입영원	학적 변동	우선의무 부과 의뢰	연기 해소	귀가 해소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국외여행 기간만료	행방불명자 색출	직권말소 재등록	기피자 색출	현역병복무 중보충역 편입자	그 밖의 사유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다. 통지 제외 및 취소내역																	
시기	구분	계	생계 곤란	수형	고아	출국	선원	병적 편입	전시 근로역	전출	직권 말소	학력 정정	군간부 후보생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체역 편입신청	사망	그 밖의 사유
제외	금월																
	누계																
취소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라. 연기사유

사유	계	질병	가사 정리	행방 불명	각군 지원	출국 대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중보건의 자원	대학 입시	기말 시험	졸업 예정	기술원 재원	검정고시 응시	자격 시험	채용 시험	생계 곤란	재감	동시 재영	연수 교육	경기 출전	그 밖의 사유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마. 귀가(퇴영)자 학력별·질병유형별 현황

질병유형	금월											누계											
	계	외과	내과	결핵	정신건강의학	신경	피부비뇨	이비인후	안과	치과	기타	계	외과	내과	결핵	정신건강의학	신경	피부비뇨	이비인후	안과	치과	기타	
학력																							
계																							
대학																							
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중퇴																							
중학교졸업																							
중학교 졸업미만																							

바. 귀가(퇴영)자 치료기간별·질병유형별·학력별 현황(누계)

구분	질병유형별											학력별					
	계	외과	내과	결핵	정신건강의학	신경	피부비뇨	이비인후	안과	치과	기타	계	대학	고졸	고퇴	중졸	중졸미만
시기																	
계																	
귀가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타																
퇴영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타																

사. 귀가(퇴영)자 신체등급별 내역(누계)

아. 재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처리내역(누계)

급수별		계	1급	2급	3급	4급	급수별	계	1급~4급	5급	6급	7급	신체검사 대기
귀가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타												
퇴영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타												

자. 입영자 학력별 · 신체등급별(누계)

차. 입영자 연령별(누계)

신체등급	학력	계	대학	고졸	고퇴	중졸	중졸 미만	연령	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시기																		
계								금월											
1급								누계											
2급								X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급																			
4급																			

카. 기피자 사유별 현황

구분	계	무단 기피	가사 문제	이성 관계	채무 관련	기타
금월						
누계						

타. 기피자/행방불명자 학력별 현황

구분	계	대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미만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2. 예술·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구분	계획	통지	취소		연기			행방 불명	기피		인도		귀가		입영
			%	%	소계	%	질병		출국	기타	%	%	%	%	
금월															
누계															

※ 그 밖의 내역:

현역 ·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연도	신체등급 급
			역종 [] 현역 [] 보충역
학력사항	대학(교) 과 년 ([]재학 []퇴학 []수료 []졸업)		
	입학 연월일		졸업 또는 수료예정 연월일
지원사항	[]의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법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수의사관후보생(수련기관:)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5급 공채 구분()	소속 부처 (전화:)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병역법」 제34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현역 ·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를 지원하며,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현역의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지원자 제출서류	1. 의무 · 법무 · 수의사관후보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원진술서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기본증명서 1부 2.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없음 3.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전담의사: 없음. 다만, 일반전공의 수련자가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련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무 · 법무 ·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 휴대용 전시근로소집 안내서			
성명		군번	
입영부대			
입영일시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모이는 장소			
도착지			
※ 전화상담 ☎ 1588-9090 ⇒ 0번(병무민원상담)			

☞ 위의 휴대용 안내서는 통지서 수령 즉시 잘라내어 지갑 등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입영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영 <input type="checkbox"/> 차량수송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급	병과(주특기)	군번	
입영부대			
입영일시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모이는 장소			
도착지			
유효기간	위의 입영부대 동원지정 해제 시까지		

「병역법」 제54조에 따라 위 부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통지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에 대비하여 전시근로소집에 지정된 대체역·예비군 및 전시근로역에게 미리 보내드리는 통지서입니다.
※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의 임무 : 전시 보급품 및 탄약 운반 등 군사업무 지원
-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합니다. 동원령은 국방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며, 신문·방송 등 공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입영일시 예시 : 동원령 1월 1일 선포된 경우,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까지 입영하시면 됩니다.
- 이 통지서는 책상 서랍이나 컴퓨터, 휴대폰 등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근로소집통지서를 분실하신 분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우선 병역판정 검사	국외취업자	국외여행 허가사항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없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 증명서	없음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없음
	기타	관계 증명서류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1. 구분란의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병역의무자란과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2.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란에 √표시를 한 후 우선 병역판정검사 신청,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 신청 중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적습니다.
3. 입영·소집 대상자는 입영·소집 대상자란에 √표시를 한 후 공통사항인 학적사항란에 해당 내용을 적고 재학생 입영·소집 신청, 재학생 입영·소집 신청 취소, 입영·소집시기 변경 신청 중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입영·소집 신청자 유의사항
 - 가. 입영·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소집 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취소 후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입영·소집시기 변경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이미 입영·소집이 통지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영·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소집시기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소집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즉시
입영·소집일 연기: 2일

구 분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 입영·소집일 연기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통지서 수령인	본인과의 관계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현역 모집병(육군, 해군, 해병, 공군)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 예비군(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 []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예비군대체 복무소집 대상자 [] 기타 ()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 검사일 연기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후 희망일
	연기 사유	
[] 입영 ·소집일 연기	입영·소집일	입영부대(복무기관)
	연기 사유	재 입영 희망일(모집병만 작성)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소집일자 연기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병무용 진단서	없음
	국외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	없음	여권등록 정보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위독·사망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졸업·수료(예정)증명서, 수험능력시험접수증, 학원수강증 등 그 사실 확인(증명서)	없음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근로자로 근무 중인 사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접수한 사람	시험접수증 사본	시험응시 또는 1차 시험 결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사실확인(증명)서	없음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일자연기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이 어려운 사람	일반진단서	없음
	재감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장 발행 사실확인서	없음
	공무원, 공공단체 채용 및 면허·자격시험, 승진시험	응시원서 접수증(합격증) 사본	없음
	국가기관, 공공단체, 주요 기관 산업체 교육 중인 사람	교육 인사 명령서 사본	없음
	시설 직업훈련기관 교육 중인 사람	재원 사실 확인서	없음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 결혼·부모 회갑 또는 배우자의 출산	청첩장, 초청장 또는 의료기관 (일반)진단서	없음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자	참가 확인서	없음
	주요 업무 수행	주요 업무 수행확인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1. 구분란의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병역의무자란과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2.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관에 √표시를 한 후 그 내용을 적습니다.
3. 입영·소집대상자는 입영·소집일 연기관에 √표시를 한 후 입영·소집일, 입영부대(복무기관), 연기 사유, 재입영희망일(모집병만 작성)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 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병무용진단서 1부(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0.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국가유공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의 경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수형자(6개월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판결문 사본 1부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시·군·구·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고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 판결문 사본 1부 2. 병무용진단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허가서 사본,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중학교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병무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질병이 있는 사람	병무용진단서 1부	없음	
질병이 치유된 사람	없음	없음	
학력이 변동된 사람	학력증명서 1부	없음	
북한이탈주민(「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전사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4. 유의사항
 -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기 위하여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합니다.
 - 나. 병역감면 신청 시 신고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

서약서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비고
이주 가족				

본인은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사유로 전역함에 있어 본인과 가족이 전역일(소집해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국할 것이며,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위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7조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의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도록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병역의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부 또는 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치료 신청서(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신청용)

* 신청서 작성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인 작성사항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부상 · 질병 발생 연월일	부상 · 질병 발생 장소
	부상 · 질병명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
	부상 · 질병원인	
	부상 · 질병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고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 작성사항	
치료 지정 의료시설	치료 기간 20 부터 20 까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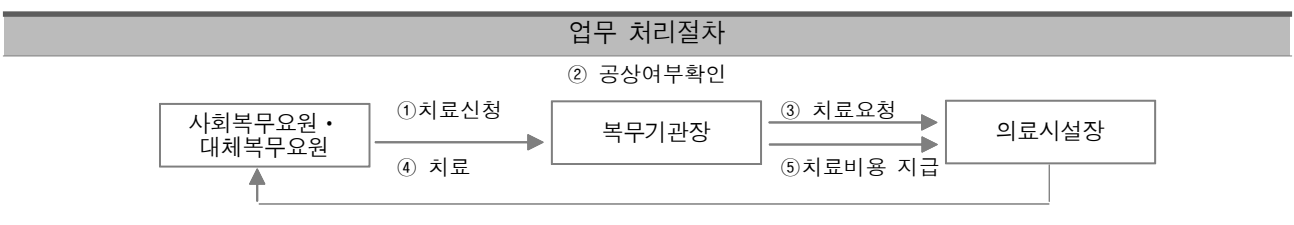
복무기관장

직인

○○의료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 1부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은 복무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치료신청서 이외에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을 위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작성사항 중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민간 의료시설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복무기관 작성사항 중 치료 지정 의료시설은 신청인이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의료시설과 달리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치료 기간 중 의료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알리고 의료시설을 변경하여 치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복무기관장은 치료기간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의 치료기간과 동일하게 적거나, 기간 단위로 치료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복무기관장이 승인한 치료기간 종료 시 신청인은 치료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장은 최초 치료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단위로 치료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공상으로 결정되어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의료시설(보훈병원이나 위탁치료병원을 포함합니다)에서 부상 ·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한 치료가 종료됩니다.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사망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 14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회복무 요원 · 대체복무 요원	성명	생년월일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사망 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사망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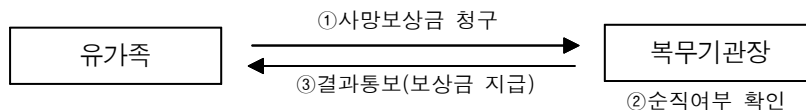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업무 처리절차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장애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과의 관계
	주소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회복무 요원 · 대체복무 요원	성명	생년월일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소집일	소집해제일
	부상(발병) 연월일	부상(발병) 장소
	부상(발병) 원인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장애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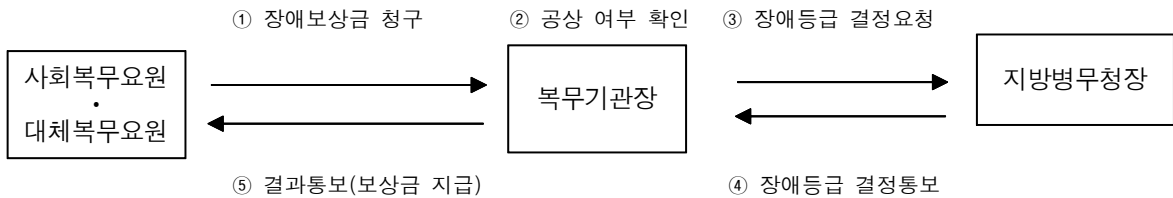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진단서
----------	-----

업무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병역기피자 · 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

기관명									
일련번호 (병적부)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계급 (학력)	기피·행방불명 및 복무이탈 사유	고발 및 소재조사 의뢰근거	형사처리 내역	형사 종결 및 색출 연월일	비고
				군번 (장소집순서)	연월일	경찰관서	처리근거	조치사항	
()	()								
()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 ② (생 략)</p> <p>③ <u>현역복무 또는 사회복지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현역복무 또는 사회복지무요원 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u></p> <p>④ (생 략)</p> <p>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 ~ ⑥ (생 략)</p> <p>⑦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 ·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기피 또는 <u>군복무 및 사회복지무요원</u>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병역관계 서류로</p>	<p>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현역복무, 사회복지무요원 · 대체복무요원</u> ----- ----- ----- <u>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면제 · 소집해제된 사람</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 ----- ----- ----- <u>군복무, 사회복지무요원 · 대체복무요원</u> ----- ----- -----</p>

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②·③ (생략)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등) ① (생략)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

제 등) ① -----

-----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

- 1. ~ 5.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2제2항-----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

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보충역 편입·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병역

-----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

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

-----.

1. ~ 7. (현행과 같음)

② -----

-- 병역처분변경원-----

----- 보충역

·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소집

해제 -----

병역처분변경원 -----

-----.

③ (현행과 같음)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① -----

보충역과 대체역의 -----

----- 편입, 대체복무요원 소집

면제·소집해제와 -----

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보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① (생략)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 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병무청장(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

-----.

③ ~ ⑤ (현행과 같음)